

「2024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2024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4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 가구
 -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 신청자는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이 포함된 세대 또는 가구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생애 1회
 - ※ 월세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만 지급
예시) 월세 15만원 ⇒ 월 15만원 지원 / 관리비 등 제외 월세만 지원
 -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2024. 9. 2.(월) 09:00 ~ 9. 19.(목) 18:00
 - 선정인원: 1,500명
 - 선정방법: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
(동점일 경우 소득 낮은 순 → 연장자 순)
 - 선정발표: 2024. 10. 30.(수) 17:00 예정
 - 지급방법: 매월 본인 계좌 입금 (첫 지급: 11월 예정)

2. 신청 자격·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월세를 매달 납부하는

청년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이 포함된 세대 또는 가구 신청 불가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 상 출생연도 기준)

- 생년월일 1984. 1. 1. ~ 2005. 12. 31.까지 신청 가능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자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1년 월세 1회 선납

- 계약서 1건 당 1명만 신청 가능

※ 단,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 인정

※ 임대차계약서 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 월세 80만원

⇒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신청인의 '24년 7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충족해야 함.

※ 2024년 7월분 고지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만 심사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심사

※ 각 세대원 또는 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 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 월/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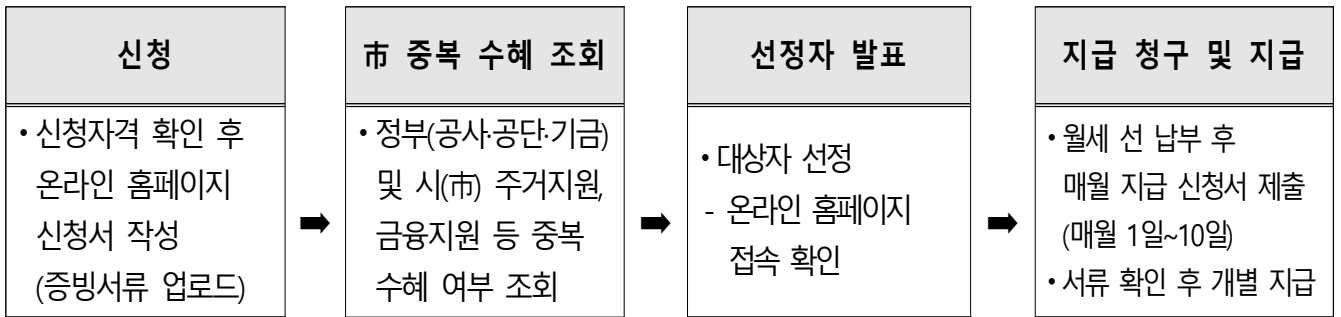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임차주택 금액(임차보증금 1억 원 & 월세 60만원) 초과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市)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개인 거래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신청기간: 2024. 9. 2.(월) 09:00 ~ 9. 19.(목) 18:00
- 신청인: 임차인 본인
- 신청방법: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증빙서류 업로드 후 제출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 지원금액: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최대 240만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지급방법: 월 임차료 선(先) 납부 후 선정자 본인이 매월 월세 지급 신청,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신청 기간: 매월 1일 ~ 10일
 - 선정자 이행사항: 11. 1. ~ 11. 10. 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신청
- ※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10일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 지급 신청
- ※ 신청기간 내 별도 신청 필수, 문자 알림 서비스 미제공
- ※ 기간 내 미신청한 월세 지원금 지급신청 기간은 별도 기재
- 지급시기: 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 첫 지급: 11월 25일 예정
 - ※ 기간 내 미신청한 월세 지원금 지급일은 별도 기재
 -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4. 제출 서류

○ 제출 유의사항

- ① 모든 서류는 **공고일('24. 8. 28.) 이후**의 발급분만 인정
- ② 미리보기 및 열람용이 아닌 **정식 발급본(출력본) PDF 파일**만 인정
 ※ 미리보기 및 열람용 파일 등은 법적 효력 없음
- ③ **암호(보안) 해제** 후 제출 필수

※ 제출 후 **서류 확인 및 수정 불가** 및 추후 보완 예정(10. 7.(월) 09:00 ~ 10. 9.(수) 23:59)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①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신청	○ 대전 청년 전·월세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s://djhousing.or.kr)						
② 개인정보동의서 (해당 시)	• 신청자 제외 등본 상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서명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첨부 칸에 등본과 병합하여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 관계, 세대원, 전입일 등 모든 내용 표시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 표시	○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24(www.gov.kr)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 본인 기준 '상세'로 발급 -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기준 추가 제출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 표시	○ 동 행정복지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전국 자치단체)	• 신청자 본인 기준 ① 전국 자치단체 기준 ② 과세년도: 2023~2024년(2년치) ③ 세부항목: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1부 ※ 해당 항목 과세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등본 상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기준 추가 제출	○ 동 행정복지센터 ○ 구청 세무부서 ○ 위택스(wetax.go.kr) : 로그인→발급→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지방세 미과세증명서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자 본인 기준 '전체' 이력(출생~최근까지)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로그인→민원여기요→ 개인민원 *개인별 상세조회 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로그인→민원여기요→ 개인민원→보험료 조회/신청 →직장(지역)보험료조회 →상세조회(최근순) ※ 해당 경로로 발급한 서류만 인정						
⑦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관련 제출 서류 - 등본 상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기준 추가 제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이 남부자(부양자)인 미혼 청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이 피부양자인 미혼 청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혼 청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td> <td style="text-align: center;">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남부자(부양자)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td> <td style="text-align: center;"> 본인 배우자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td> </tr> </tbody> </table>		*본인이 남부자(부양자)인 미혼 청년	**본인이 피부양자인 미혼 청년	기혼 청년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남부자(부양자)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본인 배우자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본인이 남부자(부양자)인 미혼 청년	**본인이 피부양자인 미혼 청년		기혼 청년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본인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남부자(부양자) 기준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본인 배우자 기준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납부확인서						
⑧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2024년 7월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 ※ 해당월 보험료가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내역서* 추가 제출							
⑨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임대인·임차인 서명(인), 임대인 계좌번호 포함 필수) •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FAQ 참고 (기숙사생) • 거주 사실 확인서(입실 확인서) • 생활관비 납입 증명서							

5.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1,500명
- 선정방법: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소득 낮은 순 →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소득 산정기준: 2024. 7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임대료 산정기준: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3.5%*÷12개월) + 월세

예시)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0만원인 경우,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 시
→ 보증금 월세 환산액(5천만원×3.5%÷12개월) + 월세 40만원 = 545,833원

* 2024. 7월 한국은행 기준 금리

6. 선정 발표

- 발표일: 2024. 10. 30.(수) 17:00 예정
- 방 법: 대전 청년 전·월세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접속 확인

7. 선정자 의무사항

-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매월 ‘지급 신청서’ 제출
※ 선정자 신청기간 내 별도 신청 필수, 문자 알림 서비스 미제공

1)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지급 신청	① 지급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대전 청년 전·월세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s://djhousing.or.kr) ○ 해당 은행 지점 및 홈페이지(어플) ※ 발급 기관에 문의 요망
	②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 아래 내용 모두 포함하여 발급 1) 보내는 사람* 2) 받는 사람 3) 보내는 계좌 4) 받는 계좌 5) 납부금액 6) 납부일자 * 신규신청 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가능한 이체자(부모, 배우자)만 예외적 인정 ※ 단순 거래내역조회 불가	
	③ 통장 사본	• 청년 본인 명의 • 지급신청서 작성 시 기재하는 계좌의 통장 사본 ※ 수취불가 및 적금 계좌 불가	

2) 선정자 이행 사항

선정자 이행 사항	신청 기간	지급일
'24. 10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4. 11. 1. ~ 11. 10.	매월 25일
'24. 11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4. 12. 1. ~ 12. 10.	
'24. 12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1. 1. ~ 1. 10.	
'25. 1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2. 1. ~ 2. 10.	
'25. 2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3. 1. ~ 3. 10.	
'25. 3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4. 1. ~ 4. 10.	
기한 내 미신청한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2025. 4. 20. ~ 4. 25.	2025. 5. 12.
'25. 4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5. 1. ~ 5. 10.	매월 25일
'25. 5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6. 1. ~ 6. 10.	
'25. 6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7. 1. ~ 7. 10.	
'25. 7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8. 1. ~ 8. 10.	
'25. 8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9. 1. ~ 9. 10.	
'25. 9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10. 1. ~ 10. 10.	
기한 내 미신청한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2025. 10. 20. ~ 10. 25.	2025. 11. 10.

※ 별도 보완기간 없음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변경 신청	① 변경 신청서(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작성 • 사유 발생 시 변경 신청 후 지급 신청 필수 (지급 신청 우선시 변경 신청 불가) 	○ 대전 청년 전.월세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s://djhousing.or.kr)
	② 확정일자 날인된 새 임대차계약서(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임대인 서명(인), 임대인 계좌번호 포함 필수 	
	③ 주민등록등본(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주소지 전입신고 상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24(www.gov.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외의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ex) 임대인 변경: 해당 주소지 등기부등본 추가 첨부 		

-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중지 신청서’ 제출

- 중지 사유 입력

※ 중지 신청 시 재개 불가 및 신청 다음 월부터 지원금 지급 중지

8. 지원 중지 사유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계약 내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등 포함)하게 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市)로부터 주거 지원 또는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개인 거래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9. 기타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FAQ(자주 묻는 질문)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 후 제출한 서류 및 정보 수정은 불가하며, 신청자의 허위·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받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1~8036)으로 문의 바랍니다.